ABL

[2021년 6월 1일 제작]

무배당

하나로 연금보험

2101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보장하는 ABL생명

A Better Life

1954년 출범한 ABL생명은 60여 년의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보험 그룹의
일원으로서 쌓아온 선진 상품개발능력,
디지털 고객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115만 명의 고객에게 최상의
보험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입보험료 2조 3,390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
- **총자산 19조 8,873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

〈출처:ABL생명 FY2019 결산보고서〉

- 1954년 설립, 한국 시장에서 쌓아온 60년 역사와 전통
-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선진 금융 기법과 노하우, 변액·보장성보험부터 연금·저축성보험까지 30여종의 폭넓은 상품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 보장
- 인터넷/모바일 전자서명청약시스템과 사이버센터/모바일센터를 통해 보험가입, 청약, 납입, 사고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처리
- 업계 최초 비대면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간편하게 송금
- 업계 최초 화상 고객 서비스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고객 상담
- 업계 최초 사고보험금 실시간 지급제도 시행
- 2012년 보험업계 최초 변액연금보험의 '금융자산운용방법'에 대한 특허 획득(* 특허 제 10-1211809호)

백세시대! 인생2막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
ABL생명이 제안합니다.

무배당 하나로연금보험2101

안전성

-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으로서 안전한 노후자금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5년이하 1.25%, 5년초과 10년이하 1.0%, 10년초과 0.5%)로 보장됩니다.

※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수익성

- 공시이율(연복리)로 부리되는 장기상품이면서 세제혜택(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이 있으므로 장기간 유지시 유리합니다.
- 고액계약(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일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적립형에 한함)

PLUS

- 연금형태(종신연금형 / 확정연금형/상속연금형)와 연금지급기간은 필요에 따라 복수로 선택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보장형태(거치형, 적립형 1종(무사망형) / 2종(기본형))가 다양하며 필요한 시점의 노후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품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시점에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등 다양한 특약설계로 각종 질병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

- 중도인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건강검진비, 해외여행자금 등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시 수수료 면제)
- 여유자금을 수시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가능해 연금수령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노후설계자금을 이용한 맞춤 노후 설계

- 노후설계자금 신청 시에는 연금개시 후 1회에 한해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고 50%까지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리므로, 목돈을 이용한 본인의 맞춤 노후생활설계가 가능합니다.

100세 보증지급

- 100세 보증지급 선택시 연금개시 후 100세 이전에 사망하더라도 100세까지의 연금연액 지급을 보증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상품도해 (적립형, 거치형)

기준 : 적립형(월납입보험료 100만원), 거치형(일시납보험료 1억원), 60세 연금개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 적립형 1종(무사망형) :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 재해장해급여금 : 24개월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0만원 확정지급(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적립형 2종(기본형) 및 거치형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
  - 사망보험금 : 1,000만원(적립형 기본보험료의 10배/거치형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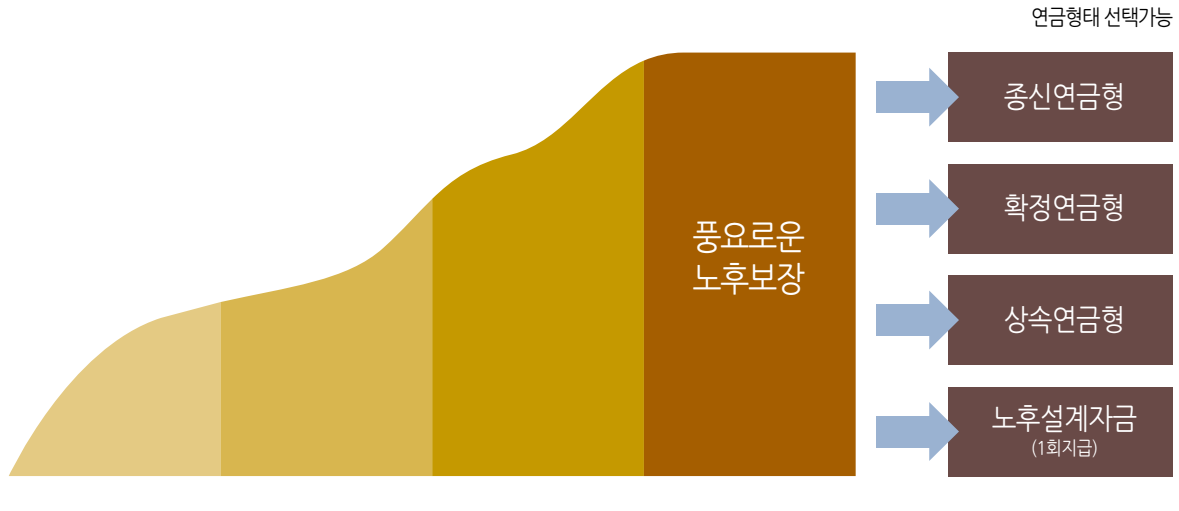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주계약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노후설계자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다만, 1회에 한함)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사망보험금	적립형 2종(기본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료의 10배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재해장해급여금	적립형 1종(무사망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4개월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0만원 확정 지급(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됩니다.
-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은 0% ~ 50% 범위에서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주계약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연금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개인계약 / 부부계약 (주피보험자)	정액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다만,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 : 10 ~ 40년 / 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부부계약(종피보험자)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지급될 연금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종신연금형(보증금액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주계약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연금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 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다만, 연금개시시점 이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함)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거치형의 경우 일시납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1.25%, 5년초과 10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자가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13.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고의사고(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는 제외)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과 이 특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비갱신형 특약(다만, 주계약의 피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약에 한함)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무) 6대질병보험료 납입면제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무)플러스정기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 II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보험약관 참조)
(무)뇌출혈진단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은 50% 지급)	**1,000만원**
(무)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은 50% 지급)	**1,000만원**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은 50% 지급)	**1,000만원**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은 50% 지급)	**1,000만원**
(무)어린이보장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은 50% 지급)	암 **1,000만원** | 경계성종양 **300만원**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10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보험약관 참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1회당)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유괴·납치 피해자가 되었을 때(최초 1회)	**10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은 50% 지급)	**500만원**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과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수술보장특약Ⅲ (갱신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1회당)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무)암수술보장특약Ⅳ (갱신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수술을 받았을 때(1회당)	최초 1회 : 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9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2회 이후 : 암 **30만원** | 경계성종양 **3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1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20만원**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은 50% 지급, 최초계약에 한함)	암 **1,000만원** | 유방암, 전립선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100만원**
(무)암직접치료입원 보장특약Ⅲ(갱신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5만원** |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무)요양병원암입원 보장특약Ⅱ(갱신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6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부터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의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입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은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제외)의 경우 최초 1회 진단시 특약의 갱신이 불가하나,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에는 최초 1회 진단시 해당급부를 지급한 후 갱신되면 다시 갱신 계약기간 3년 동안 각각 최초 1회씩 보장합니다.
- (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은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에 한하여 면제하여 드립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및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만기 갱신부로 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적립형 2종(기본형) 기준 : 남자40세, 주계약 월납입 기본보험료 50만원, 2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공시이율 2.20% 가정		평균공시이율(2.25%), 공시이율(2.20%) 중 작은 값		최저보증이율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500,000	190,235	12.7%	190,235	12.7%	188,017	12.5%
6개월	3,000,000	1,646,051	54.9%	1,646,051	54.9%	1,638,300	54.6%
9개월	4,500,000	3,107,429	69.1%	3,107,429	69.1%	3,090,838	68.7%
1년	6,000,000	4,574,351	76.2%	4,574,351	76.2%	4,545,622	75.8%
3년	18,000,000	16,512,199	91.7%	16,512,199	91.7%	16,264,103	90.4%
5년	30,000,000	28,818,183	96.1%	28,818,183	96.1%	28,126,814	93.8%
10년	60,000,000	61,334,779	102.2%	61,334,779	102.2%	57,894,940	96.5%
15년	90,000,000	98,120,991	109.0%	98,120,991	109.0%	87,837,077	97.6%
20년	120,000,000	139,089,624	115.9%	139,089,624	115.9%	118,491,023	98.7%

거치형 기준 : 남자40세, 주계약 기본보험료 1억원, 거치형, 60세 연금개시,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공시이율 2.20% 가정		평균공시이율(2.25%), 공시이율(2.20%) 중 작은 값		최저보증이율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00,000,000	98,301,278	98.3%	98,301,278	98.3%	98,068,926	98.1%
6개월	100,000,000	98,631,418	98.6%	98,631,418	98.6%	98,167,207	98.2%
9개월	100,000,000	98,960,421	99.0%	98,960,421	99.0%	98,264,841	98.3%
1년	100,000,000	99,288,287	99.3%	99,288,287	99.3%	98,361,828	98.4%
3년	100,000,000	103,037,447	103.0%	103,037,447	103.0%	100,176,373	100.2%
5년	100,000,000	107,098,316	107.1%	107,098,316	107.1%	102,178,881	102.2%
10년	100,000,000	118,029,911	118.0%	118,029,911	118.0%	106,053,064	106.1%
15년	100,000,000	130,160,987	130.2%	130,160,987	130.2%	107,355,029	107.4%
20년	100,000,000	143,594,314	143.6%	143,594,314	143.6%	108,601,285	108.6%

- 상기 예시 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현재(2021년)의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25%), 공시이율(연복리 2.20%)중 작은 값] 및 2020년 12월의 공시이율(연복리 2.2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이하는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1.0%, 10년 초과는 0.5%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대한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로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되고, 보험료를 납입 해당일에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중도인출이 없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또는 환급률이 상기 예시된 금액 또는 환급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의 적립형은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 시 최저보증금액이 설정된 상품입니다.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 시 예시된 환급률과 관계없이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 한도로 합니다.

연금액 예시표

(예시 I) (65)세부터 연금 개시(개인형-매월지급) -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금지급 기준 계약자 적립금 12,086만원

[기준 : 적립형2종(기본형), 남자40세, 주계약 월납입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 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단위 : 만원)]

구 분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10년보증		매월 36만원씩 평생 지급		
		15년보증		매월 35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매월 35만원씩 평생 지급		
		25년보증		매월 34만원씩 평생 지급		
		30년보증		매월 32만원씩 평생 지급		
		35년보증		매월 30만원씩 평생 지급		
		100세보증		매월 29만원씩 평생 지급		
	체증형	10년보증	5%	2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5%씩 체증 후11차년도부터 매월 38만원씩 평생 지급		
			10%	17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10%씩 체증 후 11차년도부터 매월 40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5%	18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5%씩 체증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46만원씩 평생 지급		
			10%	9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10%씩 체증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55만원씩 평생 지급		
	소득보장형	10년보증	50%	매월 46만원씩 지급 후 11차년도부터 매월 30만원씩 평생 지급		
			100%	매월 53만원씩 지급 후 11차년도부터 매월 26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50%	매월 39만원씩 지급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26만원씩 평생 지급		
			100%	매월 42만원씩 지급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21만원씩 평생 지급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매월 31만원씩 평생 지급		
확정연금형	5년 선택시			매월 202만원씩 5년간 지급	예정수령액	5년간 총 12,174만원
	10년 선택시			매월 102만원씩 10년간 지급		10년간 총 12,326만원
	15년 선택시			매월 69만원씩 15년간 지급		15년간 총 12,479만원
	20년 선택시			매월 52만원씩 20년간 지급		20년간 총 12,633만원
	30년 선택시			매월 35만원씩 30년간 지급		30년간 총 12,945만원
	50년 선택시			매월 22만원씩 50년간 지급		50년간 총 13,585만원
	60년 선택시			매월 19만원씩 60년간 지급		60년간 총 13,912만원
상속연금형				매월 4만원씩 평생 지급		

• 연금지급형태는 계약 체결 시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이 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적립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함)

※ 실제 연금지급액은 경과기간 동안의 공시이율 변동 및 계약관리비용 차감 등에 따라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보다 더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예시표

(예시Ⅱ) (65)세부터 연금 개시(개인형-매월지급) - 평균공시이율 2.25%, 공시이율 2.20% 중 작은 값 기준 **연금지급 기준 계약자 적립금 15,443만원**

[기준 : 적립형2종(기본형), 남자40세, 주계약 월납입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 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단위 : 만원)]

구 분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10년보증		매월 59만원씩 평생 지급		
		15년보증		매월 58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매월 57만원씩 평생 지급		
		25년보증		매월 56만원씩 평생 지급		
		30년보증		매월 53만원씩 평생 지급		
		35년보증		매월 51만원씩 평생 지급		
		100세보증		매월 50만원씩 평생 지급		
	체증형	10년보증	5%	41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5%씩 체증 후 11차년도부터 매월 64만원씩 평생 지급		
			10%	29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10%씩 체증 후 11차년도부터 매월 69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5%	31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5%씩 체증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79만원씩 평생 지급		
			10%	16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10%씩 체증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98만원씩 평생 지급		
	소득보장형	10년보증	50%	매월 73만원씩 지급 후 11차년도부터 매월 49만원씩 평생 지급		
			100%	매월 83만원씩 지급 후 11차년도부터 매월 41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50%	매월 63만원씩 지급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42만원씩 평생 지급		
			100%	매월 66만원씩 지급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33만원씩 평생 지급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매월 56만원씩 평생 지급		
확정연금형	5년 선택시			매월 270만원씩 5년간 지급	예정수령액	5년간 총 16,203만원
	10년 선택시			매월 142만원씩 10년간 지급		10년간 총 17,084만원
	15년 선택시			매월 99만원씩 15년간 지급		15년간 총 17,994만원
	20년 선택시			매월 78만원씩 20년간 지급		20년간 총 18,935만원
	30년 선택시			매월 58만원씩 30년간 지급		30년간 총 20,905만원
	50년 선택시			매월 41만원씩 50년간 지급		50년간 총 25,191만원
	60년 선택시			매월 38만원씩 60년간 지급		60년간 총 27,497만원
상속연금형				매월 27만원씩 평생 지급		

• 연금지급형태는 계약 체결 시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이 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적립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함)

※ 실제 연금지급액은 경과기간 동안의 공시이율 변동 및 계약관리비용 차감 등에 따라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보다 더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Ⅲ) (65)세부터 연금 개시(개인형-매월지급) - 공시이율 2.20% 기준

연금지급 기준 계약자 적립금 15,443만원

[기준 : 적립형2종(기본형), 남자40세, 주계약 월납입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 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단위 : 만원)]

구 분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10년보증		매월 59만원씩 평생 지급		
		15년보증		매월 58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매월 57만원씩 평생 지급		
		25년보증		매월 56만원씩 평생 지급		
		30년보증		매월 53만원씩 평생 지급		
		35년보증		매월 51만원씩 평생 지급		
		100세보증		매월 50만원씩 평생 지급		
	체증형	10년보증	5%	41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5%씩 체증 후 11차년도부터 매월 64만원씩 평생 지급		
			10%	29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10%씩 체증 후 11차년도부터 매월 69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5%	31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5%씩 체증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79만원씩 평생 지급		
			10%	16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직전년도의 10%씩 체증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98만원씩 평생 지급		
	소득보장형	10년보증	50%	매월 73만원씩 지급 후 11차년도부터 매월 49만원씩 평생 지급		
			100%	매월 83만원씩 지급 후 11차년도부터 매월 41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50%	매월 63만원씩 지급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42만원씩 평생 지급		
			100%	매월 66만원씩 지급 후 21차년도부터 매월 33만원씩 평생 지급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매월 56만원씩 평생 지급		
확정연금형	5년 선택시			매월 270만원씩 5년간 지급	예정수령액	5년간 총 16,203만원
	10년 선택시			매월 142만원씩 10년간 지급		10년간 총 17,084만원
	15년 선택시			매월 99만원씩 15년간 지급		15년간 총 17,994만원
	20년 선택시			매월 78만원씩 20년간 지급		20년간 총 18,935만원
	30년 선택시			매월 58만원씩 30년간 지급		30년간 총 20,905만원
	50년 선택시			매월 41만원씩 50년간 지급		50년간 총 25,191만원
	60년 선택시			매월 38만원씩 60년간 지급		60년간 총 27,497만원
상속연금형				매월 27만원씩 평생 지급		

• 연금지급형태는 계약 체결 시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이 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적립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함)

※ 실제 연금지급액은 경과기간 동안의 공시이율 변동 및 계약관리비용 차감 등에 따라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보다 더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은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일정비율(10%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적립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거치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후에 연금지급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각 확정 연금지급 횟수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생존 중에는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계약의 종피보험자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될 연금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 방법은 연금개시 이전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1.25%, 5년초과 10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0.5%로 합니다.
- 상기 연금 예시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2021년 기준 2.25%), 공시이율(2020년 12월 2.20%)이 경과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실제 연금지급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액도 변동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서,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한 종신연금형의 연금연액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연금지급 당시의 연금사망률 적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한 안내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2">가입한도</th><th>가입단위</th></tr>
<tr><td rowspan="4">주계약</td><td rowspan="4">(무)하나로연금보험2101</td><td>보험종류</td><td>기본보험료</td><td>추가납입보험료</td><td rowspan="4">1만원</td></tr>
<tr><td rowspan="2">적립형</td><td rowspan="2">1종(무사망형)
• 0 ~15세
: 10만원 이상
• 16세 이상
: 15만원 이상
2종(기본형)
: 10만원 이상</td><td>총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이내</td></tr>
<tr><td>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td></tr>
<tr><td>거치형</td><td>1,000만원 이상</td><td>총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200% 이내
연간(보험년도기준)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이내</td></tr>
<tr><td rowspan="9">선택특약</td><td colspan="2">(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td><td colspan="2">주계약 월납입보험료 100만원
(다만, 총 납입보험료 한도는 1억 2천만원)</td><td>-</td></tr>
<tr><td colspan="2">(무)플러스정기특약</td><td colspan="2">500만원 ~ 7억원</td><td>500만원</td></tr>
<tr><td colspan="2">(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 (무)어린이보장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td><td colspan="2">500만원 ~ 2,000만원</td><td>500만원</td></tr>
<tr><td colspan="2">(무)재해장해보장특약 /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td><td colspan="2">1,000만원 ~ 3억원</td><td>100만원</td></tr>
<tr><td colspan="2">(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td><td colspan="2">500만원 ~ 1억원</td><td>500만원</td></tr>
<tr><td colspan="2">(무)뇌출혈진단특약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td><td colspan="2">500만원 ~ 5,000만원</td><td rowspan="2">100만원</td></tr>
<tr><td colspan="2">(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td><td colspan="2">500만원 ~ 3,000만원</td></tr>
<tr><td colspan="2">(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td><td colspan="2">500만원 ~ 3,000만원</td><td rowspan="2">500만원</td></tr>
<tr><td colspan="2">(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td><td colspan="2">500만원 ~ 1,000만원</td></tr>
<tr><td>제도성특약</td><td colspan="4">표준하체인수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단체취급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무)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거치형) /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거치형)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td></tr>
</table>

-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한 보험료 또는 일시납 보험료를 말하며(최저보험료의 경우 가입나이에 따라 상이), 추가납입보험료(적립형, 거치형에 한함)라 함은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후부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가능)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최저 5만원 이상입니다.
- 각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내에서 독립적으로 지정 가능하며, 세납의 경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계약 거치형 가입시에는 (무)플러스정기특약,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단체취급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
- (무)플러스정기특약의 경우 보험기간을 달리하여 2개의 특약으로 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다만, 합산 보험가입금액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3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의 경우 부부 동시보장을 원할 경우 본인형, 배우자형을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무)플러스정기특약,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은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의 3배이내, (무)재해장해보장특약, (무)뇌출혈진단특약,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은 주계약의 1배 이내,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의 1배 이내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은 주계약의 0.5배 이내에서 위험등급 1급, 2급은 1,000만원까지, 3급, 4급 및 비위험직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은 주계약의 1배 이내에서 기계약합산 일반사망보험금이 1억원 이하는 3,000만원까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사망보험금의 30%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주계약 납입기간 20년납 이하 시에 한해서 부가 가능합니다.(주계약 20년납 초과시는 가입 불가)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부가시 주계약 월납입보험료 납입면제 한도는 주계약 납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주계약 보험료는 피보험자 1인당 다음의 한도 금액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단위미만 절사)
  *보험료한도 = Min (100만원, 총납입보험료한도 1억2천만원 ÷ (주계약 납입기간×12))
  〈한도 금액 예시 : 주계약 10년납 1,000천원, 20년납 500천원〉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선택 시 (무)재해장해보장특약,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는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과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부가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 예시표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천만원, 70세만기, 20년납,
(다만, 갱신형 특약은 3년만기 전기납 최초계약시,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주계약 월납입 보험료 50만원, 20년납 기준) 단위 : 원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837	1,921	4,912	354	1,209	4,257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14,807	39,127	88,769	11,202	24,437	46,700
(무)플러스정기특약	5,500	6,300	6,900	2,700	2,900	3,000
(무)재해사망보장특약II	550	560	560	160	160	160
(무)재해장해보장특약	730	690	620	390	420	430
(무)수술보장특약III(갱신형)	1,400	2,500	4,500	2,000	3,200	5,300
(무)신입원특약IV(갱신형)	1,500	1,500	2,400	1,800	1,700	3,400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2,520	3,000	3,190	1,130	1,370	1,540
(무)뇌출혈진단특약	1,760	1,900	1,830	1,370	1,580	1,550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820	940	880	130	140	120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940	1,020	960	680	720	660
(무)암수술보장특약IV(갱신형)	160	400	1,200	410	980	1,520
(무)암진단특약VI(갱신형)	420	1,290	3,830	900	1,930	3,250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	120	250	650	180	380	750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II(갱신형)	10	30	70	40	90	170

• 갱신형 특약의 경우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다만, 갱신일로부터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만기 갱신부로 합니다)

(무)어린이보장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4세 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가입나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남 자	1,990	1,820	1,720	1,670	1,650	1,650	1,670	1,690	1,740	1,800	1,860	1,930	2,000	2,090	2,190
여 자	1,490	1,340	1,240	1,190	1,160	1,140	1,130	1,130	1,140	1,160	1,180	1,210	1,250	1,290	1,330

가입시 유의사항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1종(무사망형) 및 2종(기본형)의 보험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약자는 '1'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적립형의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4.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의 총 인출금액은 거치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서 초년도 연금연액 및 연금개시시점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6.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특약에 관한 사항

-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다만, 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만기 갱신부로 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최대 99세까지 갱신 가능하고, 보장은 최대 100세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을 청약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세제혜택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특약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저축성보험 부리이율에 대한 사항
•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만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단체취급특약에 관한 사항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불만족상담 및 민원상담 안내
〈불만 접수(상담) 방법 안내〉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소비자부 (우)07332
•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 팩스 : 02-3787-8719
•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 e-mail : customer@abllife.co.kr
•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70 / 영남지역본부 : 051-55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0733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콜센터 1588-6500 www.abllife.co.kr

마케팅부 제작(2021.06.01)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39호 (2021.05.25~2022.05.24)